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討報告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11. 27.

行政委員會 專門委員金玉然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討報告書

### 1. 경 과

의안 제257호로 2023년 11월 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개정 조항이 있어 이를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신설(안 제14조의2)
  -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재직기간 기준 확대 및 가산일수 확대(안 제13조 및 별표 4)
- 다. 경조사특별휴가일수 정비(안 별표 5)
  -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5일의 경조사특별휴가 부여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 10. 5.~10. 25./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시행. 2023.10.19.) 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3조에서 경력직·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과 관련하여 연가가산의 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을 현행의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연가가산 일수는 현행의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안 [별표 4]의 연가가산일수 또한 변경함.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이 경력직·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대상 재직기간 및 연가가산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시행. 2023.7.18.)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임.

- 안 제14조의2는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근무한 시간만큼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이는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고자 개정(시행. 2023.6.13.)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근거한 것임.

- 한편, 현 조례 제15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공무원이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별표 5에서는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10일"로 정해져 있으나, 안 [별표 5]는 "10일"을 원칙으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로 확대함. 이는 개정(시행. 2023.10.19.)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별표 1]에 근거한 것임.

#### ○ 검토 결과

-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현행화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부합한 것 으로 판단됨.

## 참 고 자 료

### 1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討報告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11. 27.

行政委員會專門委員金玉然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討報告書

### 1. 경 과

의안 제258호로 2023년 11월 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다자녀 할인을 서울시 조례와 합치하도록 정비하여 다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구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함으로써 소비자 보상권을 보장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다자녀 할인을 서울시 조례와 합치되도록 정비(안 제9조)
- 나. 구의 귀책에 따른 반환을 소비자 귀책 시 반환 규정과 대칭적으로 규정 마련(안 제10조)
- 다. 체육시설의 실제 운영 현황에 맞도록 운영시간 등 조문 정비(안 별표 3)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3. 10. 5.~10. 25./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할인을 서울시 조례와 합치하도록 정비하고, 구의 귀책 사유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보상권을 보장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사용료의 감면)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30% 감면적용을 받는 대상 중에서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부모와 그 자녀"를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으로 변경함.
- 안 제10조(사용료의 반환)는 체육시설 관리상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현행 조례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용개시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을 반환"하되,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부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하도록 함.

- 안 [별표 3](체육시설 사용료)에서는 체육시설의 운영 현황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의 주말이용기준 시간을 현행의 "2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변경하고,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에 대해서는 이용 기준시간(4시간)을 명시함. 또한, '안양천 체육시설'의 테니스장 이용 시 '코트 1면당사용료를 받고 있어 현행의 "개인사용료"로 명시한 부분을 "전용사용료"로 변경한 것임.

#### ○ 검토 결과

- 본 안건은 다자녀 할인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조례와 합치되도록 정비하고 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상에 대해「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보상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에 대한 30% 감면 기준 조항을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의 규정과 합치하도록 하되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현행의 30% 감면기준을 유지함.
- 또한, 사용개시일 이후의 사용료의 반환 규정과 관련하여 현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료 전액만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sup>1) 「</sup>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에 대하여 50%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측면이 있음.

이를 개선하고자 후자의 경우에 대해 사용 개시 전일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 개시 이후의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해서 사용자 보상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본 개정을 통해 현 조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감면대상 조항을 서울시 조례와 일치시킴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사용자에 대한 보상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등 조례 개정 취지를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참 고 자 료

### 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3, 2020.1.9, 2023.7.18>
  - 1. "출산 및 양육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 2. "다자녀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 3. "저출산 인식개선 정책"이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관·학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행사, 홍보 등을 말한다.
  - 4. "다둥이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족(다만, 막내가 18세 이하)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 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6.7.19, 2009.1.8, 2010.1.7, 2013.3.28, 2019.3.28, 2019.5.2, 2019.7.18, 2019.9.26, 2021.3.25, 2021.9.30, 2023.3.27., 2023.7.18>
- 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 가. 18세 이하인 자(제7조제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5세 이상인 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

- 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액
- 2.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 가. 다등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등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액